

공 고 제	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단위: km, 백만원)	

[illegible]

364mm×257mm
(인쇄용지(2급) 60g/m²)

1. 노선명은 일반도로 노선명을 적되, 일반도로 노선명이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2. 노선번호는 일반도로 노선번호(예: 도시계획 도로대로 1류 10호선,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를 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노선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3. 기점·종점란은 자전거도로의 기점·종점과 연결한 지번을 적는다.